

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. 1. 12 선고 2022가단1730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12. 8.

판 결 선 고 2023. 1. 1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2. 15.부터 2019. 4. 14.까지 연 1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다만, 채권자는 '원고'로, 채무자는 '피고'로 한다)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사경화

별지